

# 소 장

원 고 김 부 진 외 1335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민 심

담당변호사 변 영 철

서 은 경

## 소 장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 · 서 은 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 세종빌딩 제1105호

(전화 051-507-9030 팩스 051-507-9031)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대표이사 조석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함)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소재 영광원자력발전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울진원자력발전소 등 4개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들'이라고 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부진 외 190명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원고 감복순 외 45명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원고 김영옥 외 29명은 울진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원고 고희식 외 33명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로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고(이하 피해자 원고들이라고 함), 나머지 원고들은 그 배우자 및 직계 가족들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들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방사선을 누출하여 왔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주민 피폭선량(전신) 분포\* (단위: mSv/yr)

지역 연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피폭선량 <sup>1)</sup>	피폭선량 <sup>2)</sup>	피폭선량 <sup>1)</sup>	피폭선량 <sup>2)</sup>	피폭선량 <sup>1)</sup>	피폭선량 <sup>2)</sup>	피폭선량 <sup>1)</sup>	피폭선량 <sup>2)</sup>
1990	0.00374	—	0.00168	—	0.00021	—	0.00038	—
1991	—	—	—	—	—	—	—	—
1992	0.00502	—	0.00202	—	0.00046	—	0.00090	—
1993	0.00788	—	0.00182	—	0.00020	—	0.00134	—
1994	0.00691	—	0.00271	—	0.01520	—	0.00149	—
1995	0.00686	0.00690	0.00424	0.00420	0.00183	0.00180	0.00124	0.00120
1996	0.00136	0.00140	0.00270	0.00270	0.00164	0.00190	0.00271	0.00170
1997	—	0.00240	—	0.00240	—	0.00300	—	0.00030
*1998	0.00327	0.00210	0.00280	0.00170	0.00085	0.00070	0.00125	0.00090
*1999	0.00821	0.00490	0.00371	0.00230	0.00174	0.00110	0.00162	0.00100
*2000	0.00627	0.00360	0.00302	0.00350	0.00415	0.00270	0.00257	0.00130
*2001	0.00061	0.00640	0.00060	0.00440	0.00027	0.00160	0.00085	0.00230
2002	0.00278	0.00270	0.00784	0.00690	0.00677	0.00680	0.01880	0.01670
2003	0.00214	0.00210	0.00679	0.00600	0.00619	0.00600	0.00366	0.00360
2004	0.00541	0.00520	0.00517	0.00460	0.00581	0.00600	0.00251	0.00240
2005	0.00415	0.00512	0.00332	0.00285	0.00291	0.00301	0.00349	0.00338
2006	0.00688	0.00664	0.00389	0.00348	0.00383	0.00485	0.00170	0.00165
2007	0.01580	0.01510	0.00678	0.00579	0.00632	0.00604	0.00210	0.00209
2008	0.00474	0.00460	0.00962	0.00831	0.01090	0.00957	0.00196	0.0019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주) 및 지식경제부 등에서 정례적으로 평가한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 보고서') 1990-2008년 원전 주변주민 방사선 피폭선량(전신) 결과에서 분석

1)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 규제치 : 부지당 연간 0.25mSv)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평가 (\* 1998~2001년 측정치는 소아기준)

2)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보고서 자료(한수원(주))-원자력사업자평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 보고서, 1991-2009

\* 지식경제부, Nuclear power note, 2007, 2008

(2) 원고 김부진 외 300명의 피해자 원고들은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누출된 방사선에 피폭되어 왔습니다.

(3)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원거리(반경 30km 초과)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하여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에 거주한 주민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율이 **2.5배** 높고, 근거리(반경 5~30km)에 거

주하는 주민의 경우는 **1.8배**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 방사선 관련 암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여자)

암 부위	지표	주변지역	대조지역	
			근거리	원거리
방사선 관련 암(전체)	발생률*	190.5	182.3	147.0
	상대위험도	1.2(0.77-1.74)	1.1(0.69-1.68)	1.0
위암	발생률*	50.1	59.4	44.9
	상대위험도	1.2(0.83-1.68)	1.3(0.89-1.79)	1.0
폐암	발생률*	13.5	26.8	20.1
	상대위험도	0.8(0.38-1.74)	1.4(0.64-2.83)	1.0
유방암	발생률*	45.2	30.6	29.2
	상대위험도	1.5(0.90-2.60)	1.1(0.60-1.99)	1.0
갑상선암	발생률*	61.4	43.6	26.6
	상대위험도	<b>2.5(1.43-4.38)</b>	1.8(0.98-3.24)	1.0

\* 세계인구 연령표준화 발생률임

주민코호트 그룹코드

그룹코드	지역	원전과의 거리
A	원전 주변지역	5km 이내
B	근거리 대조지역	5km-30km
C	원거리 대조지역	30km 이외

(4)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시 기장군이 공동으로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민 4,910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암 검진을 받은 기장군민 3,031명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이 **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장 주민 암 종별 분석		(단위:명)
암 종합검진자(3031명)	94명 암 확인	
갑상선암	41	
위암	31	
대장암	6	
폐암	4	
전립선암	3	
간암 식도암 유방암 직장암	각 2	
담도암	1	
뇌혈관 검진자(1879명)	3명 악성뇌종양	

(5) 원고 김부진은 2012. 5. 14. 부산성소병원에서 갑상선암(thyroid carcinoma)으로 진단받았고, 나머지 피해자 원고들도 모두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6) 따라서 피고들은 방사선 방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인 원고들 1인당 각 15,000,000원, 피해자의 배우자는 3,000,000원, 피해자의 자녀는 각 1,000,000원, 피해자의 부모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일부 금액만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추후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14. 12.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민 심

담당변호사 변 영 철

서 은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